

# 인론과 법

## 언론소송과 판결

### 인천지법, 폭력 피해 동영상 인터넷 게시 '무죄'

인천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장성욱 부장판사)는 17일 인터넷 카페에 자신이 폭행당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올렸다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34)에 대해 벌금 70 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에 자신이 폭행당하는 동영상을

올린 것은 피해자를 비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폭력을 휘둘렀다는 오해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더라도 자신이 폭력을 휘두른 것이 아니라 폭행을 당한 것이 사실이라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 등의 비방으로 실추된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 조치로 사회적 통념상

허용될만한 정도의 정당행위”고 덧붙였다.

A씨는 2007년 10월 30일께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자신이 이 아파트 동대표로 선출된 것에 불만을 품은 B씨와 몸싸움을 벌이다가 CCTV에 자신이 폭행당하는 장면이 녹화된 동영상을 인터넷 이 아파트 동호회 카페에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뉴시스 2009년 5월 17일

### 확정판결과 상반된 글 게재해도 구체적 유추 안 되면 명예훼손 안 돼

판결을 통해 확정된 내용과 다른 진술을 토대로 책을 발간했다더라도 내용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이상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이용호(51)씨가 엄삼익(55)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8다77771)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6일 전부 패소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한다”며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는 출판물의 내용 중에 직접적으로 명시돼 있을 필요까지는 없더라도 적어도 출판물 내용 중의 특정문구에 의해 그러한 사실이 곧바로 유추될 수 있을 정도의 표현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적시한 내용 중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더라도 글 내용을 전체적·객관적으로 파악해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여부를 가려야지 취지가 불분명한 일부 내용만을 따로 떼어내 허위사실로 단정할 수는 없다”며 “나아가 비록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더라도 허위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것으로 단정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고의 글 가운데 몇몇 문장의 내용 자체로는 ‘여운환이 20억 원 투자금의 담보조로 원고에게 40억 원 어음을 요구했다’, ‘특검은 여운환의 로비 의혹을 밝혀내지 못했다’ 등의 의미 전달에 불과할 뿐”이라며 “각 문장만으로는 원고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이 곧바로

로 유추될 수 있을 정도의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엄 변호사는 지난 2004년께 특경가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용호게이트’ 사건의 자금전달책이자 조폭두목으로 알려진 여운환에 대한 변호를 맡으면서 여 씨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을 토대로 ‘엄삼익 변호사의 사건 실록’이라는 제목으로 월간조선 2004년 2월호에 게재했다. 그런데 게재된 글 가운데 ‘이용호게이트’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판결과 상반된 여 씨의 진술이 포함돼 있다. 이용호 씨는 엄 변호사를 상대로 “확정판결 난 사건과 다른 내용의 진술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1·2심은 “엄 씨의 글 일부가 이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1,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법률신문 2009년 3월 10일

## 법원 “지만원, 문근영 비방글은 색깔론”

보수논객 지만원 씨가 지난해 영화배우 문근영(22) 씨의 기부 행위를 두고 ‘빨치산’을 언급하며 비방한 것에 대해 법원이 ‘색깔론’으로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부장 김성곤)는 17일 지 씨가 문 씨와 관련한 자신의 글을 왜곡 보도해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SBS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 씨가 자신의 글에서 문

씨의 기부 행위에 빨치산 선전 등의 어떤 목적이 있었다는 식으로 비판적으로 서술한 것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음이 인정된다”며 “지 씨의 각 글이 극단적이고 자극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점에 비춰 ‘문근영의 기부에 색깔론을 들고 나왔다’는 언론사의 보도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지 씨는 지난해 11월 문 씨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6년 동안 8억 5천만 원

을 기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목을 받자 자신의 홈페이지에 ‘기부천사 만들기, 좌익세력의 작전인가’, ‘문근영은 빨치산 선전용’ 등의 글을 올렸다.

또 문 씨 외조부의 빨치산 전력을 문제 삼으며 “순녀인 문 씨의 선행은 빨치산을 선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방했다.

한국일보 2009년 4월 18일

## “방송인터뷰 고의 없다면 명예훼손 아냐”

방송국 고발 프로그램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인터뷰했다라도 고의가 없다면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3민사부(김상배 부장판사)는 7일 이모(64)씨가 “평소 데리고 있던 A씨를 ‘현대판 노예’로 묘사한 방송국 고발 프로그램과 인터뷰를 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김모(76) 씨 등 마을주민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피고들에게 ‘원고로부터 폭행당했다’고 말했다,

당시 A씨 옷에 피가 묻어 있었던 점, A씨가 임금을 받지 않고 원고의 과수원에서 일했던 점, 원고가 지능이 떨어지는 A씨를 혼자 집에 두고 며칠씩 집을 비웠던 점 등이 인정된다”며 “피고들이 인터뷰에 응하면서 그들이 보거나 느낀 내용을 사실대로 진술했을 뿐 허위사실을 말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들의 인터뷰 내용이 다소 과장되거나 부적절한 표현이 있더라도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던 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중

합하면 피고들이 어떠한 불법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06년 5월 모 방송국 고발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이 ‘현대판 노예’를 부리는 것처럼 방송되자 방송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및 정정보도 소송을 내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 씨는 이어 방송국과 인터뷰한 김 씨 등을 상대로 2천만 원의 손해소를 내 1심에서 승소했지만 주민들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연합뉴스 2009년 5월 7일

## 인천지법, “명예훼손 공연성 인정 신중해야”

인천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장성욱 부장판사)는 15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 대한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명예훼손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해칠 현실적 위험성이 있는 것이다”며 “특정 소수가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들었더라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의 요건이 충족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게 되면 범죄의 성립 여부가 결정되고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될 우려가 있으므로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한 공연성의 인정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말을 들은 사람이 B씨뿐이고 B씨가 이 같은 내용을 전파했

다고 불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연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3일 인천 남구 자신의 부동산사무실을 방문한 B씨에게 C씨의 불륜관계를 얘기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게 되자 항소장을 냈다.

뉴스시스 2009년 5월 15일

## “공산당이 싫어요” 이승복 오보 전시, 500만 원 배상

조선일보의 68년 ‘이승복 어린이 일가족 학살’ 보도에 대해 현장 취재도 거치지 않은 ‘작문’ 수준의 허위보도로 고 주장하며 ‘오보 전시회’를 연 김주언 전 언론개혁 시민연대 사무총장이 조선일보에 500만 원을 물어주게 됐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조선일보사가 김 전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7다71233)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12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사에 보도된 이승복의 말은 원고가 만들어낸 것으로서 거짓이라는 취지의 피고의 적시사실은 허위라고 볼 수밖에 없고, 피고가 이를 진실로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밝혔다.

김 전 사무총장은 조선일보가 68년 12월 11일 사회면에 “공산당이 싫어요” 어린 항거 입꺾어 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이승복 어린이 가족 살해사건 기사에 대해 “이승복 어린이가 무장공비에게 ‘공산당이 싫어요’ 라는 말 등의 보도는 취재기자가 현장에 가지 않고 거짓으로 꾸며 작성한 것”이라며 지난 98년 ‘오보 전시회’를 열었다. 이에 조선일보는 김 전 사무총장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남북 대치상황에서 어린이와 일가족을 학살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지만 이승복 사건이 의혹조차 제기할 수 없는 절대적 대상이라고 할 수는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

했다. 그러나 2심은 “30여년을 이승복 사건이 진실로 기정사실화돼 있는 상황에서 그 보도가 허위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전시회를 열 때는 신빙성이 높은 자료를 바탕으로 신중히 의혹을 제기했어야 하지만 피고는 사건의 진실 여부에 대해 특별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며 “이승복 사건 당시와 현재의 대북관계 인식변화 등을 참작해 손해배상액을 500만 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김 전 사무총장은 오보 전시회와 관련,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06년 11월께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법률신문 2009년 2월 13일

## 법원 “진중권 교수 칼럼, 배상책임 없다”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가 대한민국의 특수수행자회의 추모제 때문에 변경된 것과 관련, 추모제에 의문을 제기하는 칼럼을 쓴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에게 명예훼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조원철 부장판사)는 대한민국의 특수수행자회의(이하 수행자회) 회원 200명이 진교수와 노컷뉴스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칼럼이 수행자회 구성에 의문을 표시하고 촛불집회를 방해할 목적으로 (추모제가) 개최됐다는 취지를 연 중 나타내 명예를 훼손했다”면서도

“이는 공공의 이해에 대한 단순 의견표명이거나 그 전제가 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행사에 대해 비판적 평가나 의견을 제시한 진 교수의 칼럼은 공론을 형성· 뒷받침하기 위해 작성된 점에서 공공성이 있다”며 “특이한 이름의 위패에 대해 실존인물이 아닐 수 있다고 본 것 역시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수행자회는 지난해 6월 5~6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특수수행자 영령에 대한 추모행사를 열었고 이 때문에 촛불집회 장소가 다른 곳으로 변경됐다.

진 교수는 같은 달 16일 노컷뉴스에 게재한 ‘북과공작수행자회의 개그쇼’라

는 칼럼을 통해 광장 잔디밭에 모셔진 위패에 무생물이나 외계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이름이 포함돼 있었고 북과공작 희생자의 99.8%가 민간인 출신인데 수행자회는 군 출신 공작원이 만든 단체라며 행사 주최 적격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진 교수는 또 북과공작이 지난 1972년 7·4 공동성명 이후 중단됐는데도 행사에 1981년생이 참석한 점, 수행자회가 행사 전날 이명박 대통령을 면담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수행자회와 회원들은 칼럼 때문에 명예가 훼손됐으며 합계 3억 원의 위자료료 지급하라고 소송을 낸 바 있다.

파이낸셜뉴스 2009년 4월 5일

## 포털 게시물 삭제 요청 시 '명예훼손 사유·URL' 밝혀야

포털의 게시물로 인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사람은 그 사유와 게시물의 주소를 명확히 기재해 삭제를 요청해야 한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21일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실명이 거론된 명예훼손성 게시물의 처리정책을 이같이 확정해 발표했다.

이날 KISO 정책위원회가 발표한 '실명이 거론된 명예훼손성 게시물의 조치를 위한 정책'에 따르면 인터넷 상의 게시물로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명예훼손 사유'와 '해당 게시물의 주소(URL)'를 명확히 기재해 삭제 등을 요청해야 한다.

또 URL의 적시 없이 삭제 등의 조치를 요구한 경우와 관련해서는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감안해 일시적이고 제한적으로 임시조치를 허용하도록 했다.

특히 정부기관 등이 URL의 적시 없이 포괄적 요청을 남발하는 경향에 대해서는 이른바 '블라인드 처리'라 불리는 임시조치를 하더라도, 이것이 '예외적 조치'로서 '일시적이고 제한적으로만 허용되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때 "사업자가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구체적인 요건과 사후절차 등을 명확히 하지 않고 있다.

KISO는 또 피해 당사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인터넷 사업자가 자율적 모니터링에 의해 문제의 게시물을 삭제 또는 임시조치 해야 하는 의무와 관련해서는, 자칫 '사적 검열'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작업과 최근의 대법원 판결 등을 종합 고려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하고 이번 결정에 서는 해당 의무를 삽입하지 않았다.

이 밖에 임시조치 이후의 게시물 처리 방침과 포괄적 요청의 처리 절차 등에 대해서도 공동의 처리정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결정과 관련해 김창희 KISO 정책위원장은 "명예훼손성 게시물 문제는 대단히 민감한 사안으로서 KISO의 이번 결정이 모든 범위를 아우르고 있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며 "최근 인터넷 게시물의 책임만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회원사들이 표현의 자유와 책임이라는 두 축 가운데 어느 하나도 희생하지 않으려 고민하면서 내린 첫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KISO의 결정은 네이버, 다음, 네이버 등 7개 회원사의 모든 포털 사이트에 적용된다.

뉴스 2009년 4월 21일

## 고법 "학사모 기부금 요구 보도 정당"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이 교복업체에 수십억 원 대의 기부금을 요구했다는 신문 보도는 정당한 것이어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3부(여상훈 부장판사)는 18일 학사모가 문화일보와 아이비클럽 등 교복업체 3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사의 주요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 이상 일부 적절치 않은 용어를 사용했다고 해도 전체적인 내용이 왜곡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기사로 인해 학사모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했지만 기사의 주요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거나 문화일보가 이를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고 상당한 사회적 영향력을 지닌 학사모에 대한 비판은 폭넓게

허용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학사모는 문화일보가 지난해 2월 "교복 값 현실화 운동을 벌여 온 학사모가 대형 교복업체들에 사회환원 기금으로 수십억 원의 기부금을 요구했다"고 보도하자 문화일보와 교복업체 3곳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고소하는 한편 25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2009년 3월 18일